

(안전보건교육)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관련 안내

1.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내용

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 확대(시행규칙 제29조)

-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(총 6개월)에서 전후 6개월(총 1년)으로 확대(시행규칙 제29조제1항)

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정비(시행규칙 별표4)

-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주기 확대(별표 4 제1호가목)
 - 정기교육 주기를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개정
-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 개선
 -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경우 채용 시 교육시간을 1시간으로,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경우 4시간으로 완화(별표 4 제1호나목)
 - 일용근로자가 채용 시 교육(또는 특별교육) 이수 후 1주일 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 해당 교육 면제 (별표 4 제1호 비고 2)
-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대상자의 교육시간 감면
 -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보건에 관한 사항만 교육하는 사업*은 해당 교육과정별(채용 시·정기·작업내용 변경 시·특별) 교육시간 2분의 1 이상 이수하도록 완화(별표 4 제1호 비고 3)
 - * 「광산안전법」, 「원자력안전법」, 「항공안전법」, 「선박안전법」
 -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신규·정기 안전교육 이수 시, 그 시간만큼 채용 시·정기(해당 반기) 교육시간 감면(별표 4 제1호 비고 4, 5)
- 관리감독자 교육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서 분리하여 규정 (별표4 제1의2호 신설)

③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 정비(시행규칙 별표5)

- 일반 근로자와 구분하여 관리감독자의 교육과정별* 교육내용을 별도 규정(별표5 1호의2)
 - * 정기교육, 채용 시 교육,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, 특별교육
- 근로자·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 및 채용 시 교육내용* 보완
 - * 위험성평가,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·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등

※ ①에 관한 사항은 신규교육 후 매 2년이 되는 날이 '21.6.27.이후인 시점부터 적용
②, ③에 관한 사항은 '23.9.27.이후부터 적용

④ 기타 개정사항

- (제26조 제목)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→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
- (제27조 제2항) 분기 → 반기
- (제28조 제3항) 교육생 관리 → 교육생 관리, 교육 과정 편성, 교육방법 등
- (제31조 제7항) 안전보건교육기관 운영에 대한 고시 위임근거 신설
- (별표 5 제1호라목) <공통내용>의 작업명란 중 제40호 → 제39호, <개별내용>의 35.란 허가 및 관리 대상 → 허가 또는 관리 대상

2.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시간(시행규칙 별표4) 관련 지침

- 현행 개정안에서 관리감독자 교육을 근로자 교육에서 분리하면서 개정전 별표 4 제1호 비고의 교육시간 면제조항을 미규정함
 - 교육의 분리 의도가 사업장 내 산재예방의 키맨(KeyMan)인 관리감독자 교육의 중요성 부각으로 교육시간 변경이 그 목적이 아닌 바,
 -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의 비고 3, 4, 5, 6를 별표 4 제1의2호(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시간)에도 동일하게 적용